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22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광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배준영
강승규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 ----- ----- ----- ----- ----- ----- ----- ----- -----.
<u><단서 신설></u>	<u>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

[illegible]

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u>중앙도시계획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u>국토교통부장관</u>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u>중앙도시계획위원회</u>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u>지방도시계획위원회</u>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u>국토교통부장관</u>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
1. ~ 3. (생략) ⑤ ~ ⑦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